## ■ 평생교육법 시행령 [별표 3] <개정 2024. 4. 16.>

## 학습비 반환기준(제23조 관련)

구 분		반환사유 발생일	반환금액
1. 법 제28조제4항제1 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		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	
2. 법 제28 조 제 4 항제 3 호 에 따른 반 환사유의 경우	인 경우	1) 수업시작 전	이미 낸 학습비 전액
		2) 총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이전	이미 낸 학습비의 2/3에 해당하 는 금액
		3) 총수업시간의 1/3이 지난 후 부터 1/2이 지나기 이전까지	이미 낸 학습비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		4) 총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	반환하지 아니함
	나. 학습비 징 수 기간이 1개 월을 초 과 하는 경우	1) 수업시작 전	이미 낸 학습비 전액
		2) 수업시작 이후	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(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)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을 합산한 금액

※학습비는 교재비, 실습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함